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 6. 27.

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3년 5월 4일

나. 발 의 자: 임헌호 의원 외 5명

다. 회부일자: 2023년 5월 11일

라. 상정일자: 제245회 영등포구의회 2023년도 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2023. 6. 20.)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임헌호 의원)

가.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내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을 통하여 바르게살기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 건설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2조)

❍ 바르게살기운동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보조금 지원 신청 및 정산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소속 공무원의 지도·감독권에 대한 사항 (안 제6조)

❍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예우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김옥연)

❍ 본 개정조례안은

-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서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한 안건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목적)에서는 본 조례의 목적이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발전시킴에 있음을 명시함.
- 안 제3조(지원)에서는 바르게살기운동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 운영 및 교육·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안 제5조(지원 신청 및 정산)는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하도록 하고 다른 법령에 의해 지원 받는 경우 중복지원하지 않도록 규정함.
- 안 제6조(지도·감독) 및 안 제7조(예우)에서는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바르게살기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한 자 등에 대하여 표창 등의 예우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사기를 진작하고자 함.

❍ 검토 결과

-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하여 제정된 것으로서, 지원 범위 및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을 활성화하고자 한 것으로 사료됨.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임헌호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8

발의연월일: 2023. 5. .

발 의 자: 임헌호、전승관、최봉희、신흥식、유승용、김지연 의원(6인)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내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을 통하여 바르게살기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 건설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제5조)

다. 소속 공무원의 지도·감독권에 대한 사항 (안 제6조)

라.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대한 예우에 대한 사항 (안 제7조)

3. 제정안: “별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나. 예산조치: 필요 시 반영

다. 입법예고(2023. 4. 25. ~ 4. 29.):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라 함은 바르게살기운동 영등포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동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바르게살기운동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 영등포구협의회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바르게살기운동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 영등포구협의회가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바르게살기운동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활성화를 위하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 정신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경비
2. 바르게살기운동 영등포구협의회의 운영 및 행사·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3. 바르게살기운동 영등포구협의회 회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바르게살기운동 영등포구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운영활성화) 구청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각 동주민센터에 구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신청 및 정산) ① 제3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 외의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지도·감독)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7조(예우) 구청장은 바르게살기 영등포구협의회의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자 또는 단체에 대한 표창

2. 그 밖에 바르게살기운동 영등포구협의회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